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가?

유엔 인권 제도가 처음 마련됐을 때부터 국제 인권 조약은 인권 침해 피해자의 구제 및 보상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과거의 인권 개념은 인권 침해 가해자를 처벌할 필요성에 주목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의 권리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 초점이 이동했습니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법원에서 효과적으로 구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제 8 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는 권리를 침해 당한 사람에 대하여 - 그러한 침해가 공무원집행 중인 자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이 권한 있는 법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당국은 인정된 구제조치를 집행해야 합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1966년 채택된 이후로도, 여타 주제를 다룬 인권 조약들 또한 구체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4년 채택된 고문방지협약은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 내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 방안을 비롯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 14 조).

유엔 총회는 2005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A/RES/60/147)(이하 “기본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기본 원칙은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지는 않으나,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국가간 합의한 내용으로, 국가들이 기본 원칙을 국내법과 국내 정책에 반영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채택 이후 피해자 권리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 프레임워크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권리는 전환기 정의의 근본 원칙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환기 정의와 피해자 권리 간 관계를 살펴보면, 전환기 정의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권리가 존중·보호·실현되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에 의하면 피해자는 개인 또는 집단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권의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제 8 조). 직접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및 피부양자, 그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개입한 이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에 의하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침해 행위의 모든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닙니다.

- (가) 사법제도에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권리;
- (나) 손해에 대해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배상을 받을 권리;
- (다) 침해 행위 및 배상 메커니즘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제 11 조).

사법 접근권

피해자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권한 있는 법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기타 행정 기구, 메커니즘, 방안이 설립될 경우 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국가는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구제책 관련 정보를 배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해당 절차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침해 행위의 경우 공소시효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타 침해 행위와 관련한 공소시효는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된 기본 원칙은 인권 침해 혐의를 받는 이들도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상

피해자는 권리를 침해 당할 경우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상은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침해 행위의 주체가 국가일 경우, 배상 책임도 국가에 있습니다. 개인 또는 민간 주체에게 책임이 있다면 해당 개인 또는 주체가 배상하고, 국가가 이미 배상한 경우에는 이들이 국가에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배상이 오로지 금전적이거나 물질적인 배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은 사죄 또는 기념비 건립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는 등의 상징적 차원의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매우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기본 원칙은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와 대표적인 배상 형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상의 형태로는 **원상회복, 보상, 재할, 만족, 재발 방지 보장**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란 침해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으로 피해자를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구금 상태에서 석방하거나, 거주지 또는 직장으로 복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권리 침해를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경제적 손해는 물리적 또는 정신적 피해, 기회 상실(교육 및 사회복지혜택 등), 손실 임금 또는 일실이익, 도의적 손해 및 침해 행위 대응 비용(변호사, 의사, 기타 서비스 등)에 적용됩니다.

재할이란 의료·심리 치료와 법률·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만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습니다. 가) 지속되는 침해 행위 중단 조치, 나) 사실 검증 및 진실 공개, 다) 실종자 또는 실종자 유해 수색 및 유해의 적절한 수습, 라) 피해자의 존엄성·명예·권리 회복을 위한 공식 선언 또는 사법 결정, 마) 사실 및 책임 인정을 포함한 공개 사과, 바)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 사) 피해자 대상 기념 행사 및 헌사, 아) 모든 종류의 훈련·교육 자료에 침해 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 포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보장이란 침해 행위가 중단되고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는 시민에 의한 군의 효과적 통제(문민통제) 보장, 사법부 강화, 변호사·의사·기자·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정책 개편, 침해 행위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